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8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문금주・한민수・강준현

문정복 • 이병진 • 서삼석

이정문 · 김영배 · 김원이

조계원 • 박홍배 • 주철현

김우영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7년부터 「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」를 도입하 고, '재제조' 등급으로 분류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 록 지원할 계획임.

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,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이전 사용이력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,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,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

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구동축전지 정보의 공개) ①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은 「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모델, 제조사 및 사용이력 정보를 공 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이력 정보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라 재사용된 구동축전지에 한정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정보의 범위,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79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(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동축전지의 사용이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를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개 정 안  제8조의3(구동축전지 정보의 공  개) ①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 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모델, 제조사 및 사용이력 정보 를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이력 정보는 「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6호에 따라 재사 용된 구동축전지에 한정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 1. (생 략) <신 설>	정보의 범위, 공개 방법 및 절 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한다.

	지 아니한 자동차제작・판매
	자등(판매위탁을 받은 자는
	제외한다)
<u>1의2.</u> · <u>1의3.</u> (생 략)	<u>1의3.</u> · <u>1의4.</u> (현행 제1호의2
	및 제1호의3과 같음)
2. ~ 19. (생 략)	2. ~ 19. (현행과 같음)